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58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사 위탁 등(안 제7조)	3
2. 경비 보조(안 제18조)	13
※ 참고자료	1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백승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27.

다. 회 부 일 : 2024.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영유아와 20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때문에, 학생들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성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정보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학생 건강검진의 결과도 공단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게다가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는 특정학년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 신청 및 관리를 해야 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건강검사의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사와 관련된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18조).

Ⅲ. 검토의견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사 위탁 등(안 제7조)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u>건강검사를</u>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건강검사 등) ① ----- ----- <u>건강검사(신체의 발달상황검사, 신체의 능력검사,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검사 및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다)</u> ----- ----- ----- -----.
② <u>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② <u>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u> ----- ----- <u>「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에 건강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u>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u>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③ <u>교육부장관은</u> ----- ----- ----- -----

현행	개정안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 ----- ----- ----- -----.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공단은-----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u>검사항목 및 절차</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⑦ ----- ----- <u>검사항목 및 절차</u> , <u>위탁</u> ----- -----.

현행 「학교보건법」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건강검사”로 정의하고¹⁾,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도록 하고, 초·1·4학년과 중1, 고1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법」에 따른 건강검진실시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

1)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하에서 ‘학생 건강검진’에 해당함)²⁾,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 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강검사의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³⁾.

이에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건강검사를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⁴⁾하여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⁵⁾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 중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는 학생

2)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3) 「**학교보건법**」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각 건강검사의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은 【참고자료】 「학생건강검사의 종류 및 검사방법」 참조.

5)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②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하고, 건강검진 결과인 검진기관의 통보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⁶⁾

< 학생 건강검사 유형 >

검사항목	대상 학년	주요 내용
신체 발달상황	초1 ~ 고3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도 산출
건강조사	초1 ~ 고3	표본학생 건강조사표 사용 - 조사결과 분석 후 학교 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참고
정신건강	초1·4/중1/고1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실시
건강검진	초1·4/중1/고1 * 구강검진은 초등 전체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초등 전체학년), 병리검사(학교건강검사규칙규칙 제5조) -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 - 결과 분석자료는 학교 건강증진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가.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건강검진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관리

가.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

나. 건강검진 결과: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2. 대상자가 교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관리

②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실시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결핵검사, 구강검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일반건강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조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 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제27조(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 밖에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⁷⁾을 주관하고,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진단을 주관하면서 그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음.

< 국가건강검진 비교표 >

구분	영유아기	청소년기		성년 건강검진	
	영유아검진	학생 검진	학교밖 청소년	일반	암검진
대상	0~5세	6~18세	9~18세(미취학)	20세 이상	20세 이상
검진 항목	문진·진찰, 발달평가 등 21개	척추측만증, 혈액·흉부 X-선 등 24개	21개 * 매독, HIV, 자궁경부암 추가	혈액·흉부 X-선 등 25개	6개 (위·유방·대장암·자궁경부암·간암·폐암)
검진 비용 ('23년)	832억 원	410억 원 (175만명)	5.2억 원 (약1만명)	7,735억 원	1조 3,077억 원
소관 부처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건보공단 위탁)	복지부	복지부
정보 관리	공단	학교장	공단	공단	공단

자료: 교육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여타 검진 정보와의 연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검진기관이 사업성 등의 사유로 참여를 기피하는 등 학교현장에서는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학생은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특정 기간(통상 1~2주) 내 검진을 받아야 함에 따른 선택권 제약 등 불편함이 있음.

7)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함.

이에 개정안은 초1·4학년과 중1, 고1에 대한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7조제2·5·7항)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이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개정안에 따를 때 국가건강검진 실시기관이라면 학생 건강검진을 할 수 있으므로 학교 차원에서는 더 이상 검진기관 선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고, 학생은 기존에 주치의 병원으로 이용하던 곳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서는 초1·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만이 아닌 여타 건강검사까지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는 신체 발달상황검사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해당하는 정신건강검사 등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을 ‘위탁’하는 본 개정안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074,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 교육부: 일부수정 -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중⁸⁾이라면서, 위탁할 경우 학생의 검진기관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는 물론, 생애주기별 검진결과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건강검진 외 타 건강조사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동 법률안의 개정취지, 각 건강조사의 특성, 검진기관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⁹⁾, 건강검진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이견없음 -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기반한 학생건강검진 재정비 기간 확보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처 간 업무 이관의 전 단계로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개정방향에 동의함.
○ 서울, 강원, 전남 교육청: 일부수정 - 학생 건강검사를 공단에 위탁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건강검사 전체를 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 대한의사협회: 신중검토 -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이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함. - 현재 초저출산, 초저수가, 과도한 법적책임 문제 등 급격한 진료환경 악화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기존 건강검진기관들의 경우에도 과도한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 및 현지조사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 학생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건강검진 수가 현실화 및 검진기관들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한 합리적인 건강검진 제도개선 대책 마련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건교사회: 신중검토 - 학생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이 아닌 이관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체계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음.

8)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학교('24.7~12).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학생 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 시범사업계획 참조.

9)

구분	교육부 검토 의견
신체 발달상황	키, 몸무게만을 측정하기 위해 검진기관을 방문토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현재 검진대상 학년은 검진기관에 위탁 실시)
신체 능력검사	검사항목인 오래달리기, 스텝검사, 등을 검진기관에 위탁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현행과 같아 학교에서 실시
건강조사	개인별 식생활 습관, 위생관리, 안전의식, 신체활동 등에 대한 자기기입식 조사로 검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 제기 우려
정신건강 상태조사	현재 학교에서 실시중인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국내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 부족 등

나. 건강검사 위탁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규정

개정안은 건강검사 위탁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는데(안 제7조제2·3항), 이는 학교별로 위탁을 하는 것에 따른 번거로움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교육부 또한 위탁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할 경우, 전국 모든 학교의 장이 개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야 하는 행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건강검사 유형을 법률로 상향규정

개정안은 기존에 「학교건강검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검사의 유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7조제1항), 이는 건강검사의 유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의도로 보임.

다만, 기존의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학생 건강검사의 유형을 규정하면서 각 건강검사 유형의 검사항목 및 방법 등을 규율하여 각각의 건강검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반면,

개정안과 같이 각 유형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나 세부규정을 두지 않고 각 유형의 명칭만을 규정하게 되면, 법률 조문만으로는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학교건강검사규칙」에 규정된 내용에 비추어보아야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오히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상향규정의 필요성이 명백한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경비 보조(안 제18조)

개정안은 학생 건강검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4조의3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제7조제1항에 따른 <u>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u> 보조한다.	제18조(경비 보조) ① ----- ----- ----- ----- ----- --- <u>건강검사(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u> ----- -----.
<신 설>	② 국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u>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u>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할 경우, 학생 검진 업무수행을 위해 증원되는 공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검진 업무 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및 시스템 개발·구축·유지관리비 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거나(안 제18조제1항),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충당

하고 있으나¹⁰⁾ 건강검진 지출액이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¹⁾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하게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법률안¹²⁾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평균 19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임을 추계한 바 있음.

< 학생 건강검사 위탁 비용 추계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인건비(A)	153	159	163	168	173	816	163
- 3급	8	9	9	9	9	44	9
- 4급 이하	145	150	154	159	164	772	154
전산장비 및 시스템(B)	103	-	11	10	10	134	27
- 개발·구축비	103	-	-	-	-	103	21
- 유지관리비	-	-	11	10	10	31	6
합계(A+B)	256	159	174	178	183	950	190

주: 「학생건강검진 체계 개선방향 마련 연구」(보건복지부 정책연구용역사업 보고서)에 따른 업무수행 필요인력의 수, 프로그램 개발비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인력 채용 규모 및 보수, 전산장비 및 시스템 도입 계획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0)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보험급여

1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서 충당하고 있으나(법 제108조의2제4항제1호), 최근 검진 증가 등에 따라 건강검진 지출액이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을 초과하는 상황임(2023년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1조 8,208억원 대비 건강검진 사업비 2조 537억 원이 지출됨에 따라 2,329억원 초과 지출됨)

1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927,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 교육부: 이견없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동 재원을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학생건강검진 위탁 시 소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 개정안에 공감함.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와 이해관계자(관계부처, 공단 등)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

문 의 처

02)6788-5184

【참고자료】

□ 학생건강검사의 종류 및 검사방법

-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

검사항목	측정단위	검 사 방 법
키	센티미터 (cm)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kg)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kg/m^2)를 성별·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 2. 비만도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신체능력검사 항목 및 방법(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3)

· 필수평가

체력 요소	검사항목
심 폐 지구력	1. 왕복오래 달리기 2. 오래달리기-걷기 3. 스텝검사
유 연 성	4. 앉아 윗몸앞으로 굽히기 5. 종합유연성 검사
근력	6-1. 팔굽혀펴기(남)

근지구력	6-2. 무릎대고 팔굽혀펴기 (여)
	7. 윗몸말아올리기
	8. 악력
순발력	9. 50미터 달리기
	10. 제자리 멀리뛰기
비만	11. 체질량지수(BMI)

- 선택평가 검사항목 : 심폐지구력정밀평가, 비만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

- 건강조사항목 및 방법(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의2)

-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예방접종/병력	가. 전염병 예방접종 나. 가족병력 다. 개인병력
2. 식생활/비만	가. 식습관 나. 인스턴트 및 그 밖에 식품의 섭취형태 다. 다이어트 행태
3. 위생관리	가. 손 씻기 나. 양치질
4. 신체활동	가.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나.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다. 수면
5. 학교생활/ 가정생활	가. 가족 내 지지 정도 나. 학교생활 적응 정도 다. 교우관계
6. 텔레비전/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가. 텔레비전 시청 나. 인터넷 이용 다. 음란물예의 노출 여부 및 정도
7. 안전의식	가. 안전에 대한 인식 나. 안전사고의 발생
8. 학교폭력	가. 학교폭력에의 노출 여부 및 정도
9.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	가. 흡연 나. 음주 다. 흡입제의 사용 여부 및 약물의 오·남용 여부 등
10. 성 의식	가. 성문제 나. 성에 대한 인식

11. 사회성/ 정신건강	가. 사회성(자긍심, 적응력 등) 나. 정신적 건강(우울, 자살, 불안증, 주의력 결핍 등)
12. 건강상담	가. 건강에 대한 상담의 요구 등

- 조사방법 : 시·도교육감은 위 조사항목 및 내용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마련하고, 학교의 장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검진항목		검진방법(세부항목)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가. 시력측정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가. 청력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4. 코병		코결골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편도선비대 · 목부위림프절비대 · 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가. 치아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나. 구강상태	치주질환(잇몸병) ·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 사 등	가. 소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 · 요잠혈 검사)
	나. 혈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세포 효소(AST · ALT) 2) 혈색소
	다. 결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0.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학생 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 시범사업계획

- (실시 방법) 학교의 장 주관으로 실시중인 학생 건강검진을 세종교육청과 강원 원주교육지원청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건보공단에 위탁
 -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자유롭게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 는 건보공단에서 운영중인 건강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 * 검진결과를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10년간 확인 가능
- ※ 시범사업 참여 학생 규모 : 약 3.5만 명(세종: 2만 명, 원주: 1.5만 명)
- (정보 연계) 나이스와 건강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검진 대상자를 송부 하고, 검진 진행사항 및 결과*를 회신받는 방법으로 추진
 - * 학생건강기록부 기재 항목(키, 몸무게 등)과 '정밀검사 요함' 판정 항목(학교별 사후관리)
- (교육·상담 실시) 학령기 연령대 특성 및 검진 내실화를 위하여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검진 의사에 의한 교육·상담 추가
 - 평상시 관심이 많은 비만 예방을 위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 지도와 더불어, 마약류를 포함한 흡연·음주·카페인 중독 예방교육 등 실시

구분	현행 운영방식	시범사업 추진(안)
운영 방식	• 학교의 장이 지정(검진일정 포함)한 검진기관 - 검진기관 방문 또는 출장검진 실시	• 원하는 검진기관에 자유롭게 내원 -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출장검진 가능
검진 항목 및 수가	• 근골격, 눈, 귀, 코, 목, 피부, 구강, 병리검사 등 10개 항목 • 기본검진비 외 성별, 비만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기본 18,210원 + 28,4200~30,810원 추가	• 현행 검진항목 외 검진 의사에 의한 교육·상담항목(약물 중독 및 비만예방 등)을 추가 하고, 검진결과 통보서에 주요내용 기재 • 현행 검진비용 보다 개인당 약 1만원수준 인상 예정(기본 검진비 인상 및 교육상담항목 추가)
검진 결과 관리	• 개별 학생의 검진결과를 서면으로 확인·관리 •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보건교사 개별 관리	• 개별 학생의 검진결과는 서면으로 제공 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건보공단)을 통해 관리(검사결과 확인 가능) • 학생건강기록부에 기재되는 항목*과 정밀 검사를 요하는 학생 정보를 나이스로 연계 (학교에서 해당 학생 사후관리에 활용) * 키, 몸무게, 검진기관, 검진일자

【 학생건강검진 위탁 실시 프로세스(안) 】

